

## 開放體制 大學의 개혁 방안

朴 珍 圭

(大教協 先任研究員)

우리나라에서 개방체제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그리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진작시키기 위해 도입한 대안적 고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대안적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이들은 종전의 學歷主義에 기초한 교육이 아닌 能力과 必要에 기초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실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독학학위제가 대학졸업검정고시 정도로, 개방대학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중간 학위취득 단계 정도로,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이 그 많은 4년제 대학들 중에서 제일 많은 등록학생을 갖고 있는 규모 큰 대학 정도로 自足한다면 이를 고등교육기관을 도입한 趣旨가 퇴색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체제 재편의 추세에 부응하여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1960년대부터 구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80년대에 들어와서 대학교육의 이념, 교육과정의 구성, 교수·학습방법 등에서 전통의 4년제 대학과는 크게 구분되는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학학위를 중히 여기는 사회 일반의 요구를 수렴하여 일정 기간 대학에 등록하거나 수강한 경험 없이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독학제)를 도입하였

다. 이들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독학제는 신입생의 선발, 교육과정의 운영, 수학 연한, 학위수여의 조건 등에서 전통의 4년제 대학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개방성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 유형의 새로운 대학학위수여 제도를 개방체제 대학이라 일컬을 수 있겠다.

개방체제 대학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기관별로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계층화되었다는 비판의 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대중화의 단계를 넘어서서 보편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세계 고등교육의 변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새로운 체제의 고등교육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겠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방체제 대학이 처음 도입될 당시와는 크게 변모된 오늘의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도록 각자의 제도가 또 다른 수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또한 여러 고등교육 부문들간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다가오는 2000년대의 ‘교육사회’에 대비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교육개혁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우리나라도 개혁을 통해 개방체제 대학을 포함한 각자의 고등교육 부문이 그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대학개방의 현황, 그리고 이들 개방체제 대학들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개혁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開放體制 大學의 현황

### 1) 개방대학

개방대학의 설립목적은 교육법 제28조의 6(목적)에 규정되어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더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개방대학은 ① 평생(계속)교육의 구현, ② 직업기술교육의 혁신, ③ 정규학교의 수용능력 한계 탈피, ④ 저소득층 출신자 혹은 적장근로자에게 교육 기회 부여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방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 규정에 따라 1982년 경기공업대학이 실험적 개방대학으로 처음 개설된 이후 부산공업대학('84), 대전공업대학 ('84), 삼척산업대학('91), 상주산업대학('91), 안성산업대학('93), 밀양산업대학('93), 진주산업대학('93), 충주산업대학('93) 등이 뒤이어 개설되어 '93년 현재 9개의 국립개방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광주대학('84), 경북산업대학('85), 전북산업대학('85) 등과 같은 3개의 사립개방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완전개방형 형태의 대학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90.4.7, 법률 제4227호), 이에 관련된 시행령까지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되었다(90.5.3, 대통령령 13000호). 이 독학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社会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독학제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경제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곧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이 정규학교 등록을 통해서가 아닌 自學自習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단계별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독학에 의해 학위를 취득하려면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과 학위취득 종합시험 등 4 단계의 시험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그 첫번째 1 단계 시험은 90년 10월 20~21일에 실시되었고, 4 단계 첫번째 시험은 92년 12월 6일에 실시되었다. 제 4 단계 최종시험 결과, 147명의 독학 학사가 처음 배출되었다. 이번 학사학위 취득 시험에는 국문, 영문, 경영, 법학, 수학, 가정, 행정, 전산, 유아교육, 간호, 농학 등 모두 11개 분야에서 총 3,972명이 응시하여 법학 33명, 행정 26명, 국문 24명, 유아교육 18명, 경영 15명, 전자계산 10명, 기타 분야 21명이 합격한 바 있다.

### 3) 방송통신대학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대학의 설립 필요성과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뜻있는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 결과 67년 11월 15일 교육법 제114조 2 항을 신설하여 국립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을 부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통신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관계당국은 68년 5월 23일자로 서울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 설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그 후 약 3년간의 준비작업 과정을 거쳐 72년 3월 9일 한국방송통신

대학설치령이 공포되어 初級大學課程의 방송통신대학설치령 시행규칙이 문교부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82년 2월 15일자로 종전의 서울대학교 부설 2년제 초급대학의 형태에서 학사학위과정의 독립된 국립대학으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립목적은 개방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법 제128조의 6(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결국 방송통신대학은 개방대학과 함께 ① 평생(계속)교육의 구현, ② 직업기술교육의 혁신, ③ 정규학교의 수용능력 한계 탈피, ④ 저소득층 출신자 혹은 직장근로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 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 3. 開放體制 대학 改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방안

#### 1) 비교적 관점에서 본 개방체제 대학의 특징

개방체제 대학들의 개혁을 위한 기본방향과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방대학,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이 전통적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들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수업연한 및 학습방법에서 볼 때, 이들 고등교육 제도들간에는 조직의 개방성 정도에 차이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각 기관에서 벌어지는 교육활동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느냐에 따라, 그리고 교수학습의 형태가 학습자 중심이거나 아니면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중심이나에 따라 완전폐쇄형—부분폐쇄형—부분개방형—완전개방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 대학의 수업연한은 4~6년으로(교육법 제110조, 120조), 수업방식은 학점취득에 의한 출석수업을 원칙으로(교육법시행령 제120조)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대학의 수업연한 및 대학재학연한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수업방식은 출석수업 외에 필요한 미체 또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10조).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제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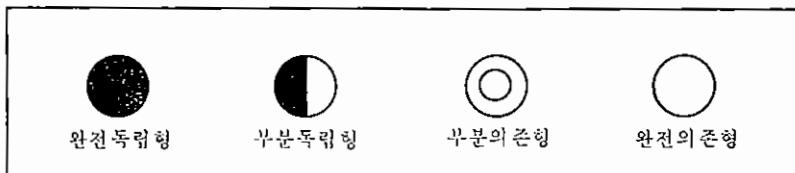
전통대학 개방대학 방송통신대 독학제

← 완전폐쇄형 부분폐쇄형 부분개방형 완전개방형  
<그림 1> 개방성에 따른 고등교육체제의 분류

조는 방송통신대학 수업방법으로 교재에 의한 학습, 과제물 지도, 방송강의 및 출석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업방법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는 일정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학연한과 수업방식에 전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상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전통적 대학은 완전폐쇄형, 개방대학은 부분폐쇄형, 방송통신대학은 부분개방형, 독학학위제는 완전개방형의 고등교육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각 고등교육유형이 나타내는 특성에 따라 이를 그림으로 분류해 보면 위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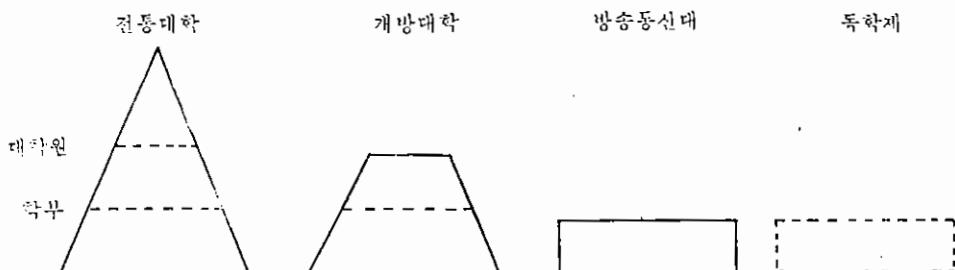
둘째, 이들 고등교육유형은 지원자의 입학자격 및 선발방법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각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이 산업체와 유지하고 있는 연계성의 정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전통적 대학은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대입학력고사와 내신성적에 의해서만 학생을 선발하여 산업체 경력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으나(교육법시행령 제71조), 개방대학의 경우 산업체 등에서 위탁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소지자, 산업체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우선 입학제적으로써 산학협동에 의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나 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기관 또는 기업체가 실시하는 특정강좌 또는 과정을 연수한 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고 하여 산업체와의 연계를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대학은 수업방식과 수학연한의 융통성이 문제에 실제로 산업체 근무자가 등록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개방되어 있으나 학생선발에 있어서 산업체에서 쌓은 경력을



※ 바깥의 '□'은 대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 산업체를 뜻하고, '○'의 전하기는 대학이 산업체에 대해 갖는 독립성 정도를 뜻함.

〈그림 2〉 산업체와의 연계성에 따른 고등교육체제의 분류



〈그림 3〉 학사과정의 운영 제도에 따른 고등교육체제 분류

우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산업체와는 비교적 독립적인 관계가 있다 하겠다(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제14조). 결국 학생 선발에서 산업체에서의 경력은 전통적 대학, 방송통신대학, 독학제, 개방대학 순으로 점점 많이 반영되고 있어 대학의 산업체와의 독립성에서는 그 반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그림 2〉 참조).

셋째, 이들 고등교육기관간에는 학사과정의 운영, 개설과목 및 개설과정의 정도, 학기의 운영 등의 융통성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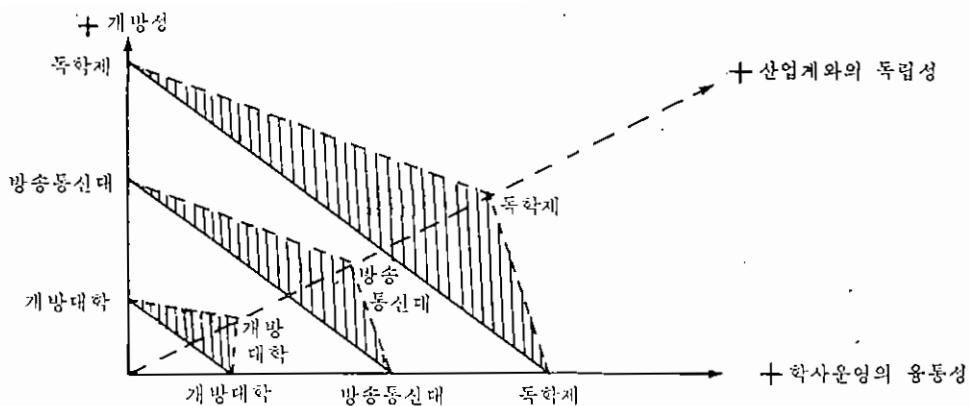
각 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수학 할 수 있는 자격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각 기관이 수여할 수 있는 최종학위는 각각 다르다. 특히 개방대학의 경우, 1989년 국립대학설치령의 개정을 통해 개방대학에도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개방대학이 전통적 엘리트형 대학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은 대중형 대학, 독학학위취득제는 보편 고등교육유형에 가장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3〉 참조).

## 2) 개혁을 위한 기본방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들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개방체제 대학들은 그동안 운영해 온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와 변화된 사회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기본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방체제 대학으로 인해 전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과 수월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개방체제 대학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는 않은 대학학위수여 과정임을 감안할 때, 대학교육기관으로서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면서 대학의 문호가 개방될 수 있는 기제나 대학간 협력체제가 개별대학 혹은 정부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방체제 대학은 기존의 전통적 대학과 그 가능에 있어서 서로 보완적이며 양립적이어야 한다. 대학은 시대의 표현이며 시대는 또한 대학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전통적 대학에 의해서만 대변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대학은 산업체가 제기하는 다양한 수요를 모두 수렴할 수 있



〈그림 4〉 공간좌표를 이용한 개방체제 대학들의 위상 표시

을 정도로 다기능적(multi-functional)이지 못하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교육의 목적을 달리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들간에 상호보완적인 제도적 역할분화가 필요하다.

셋째, 개방체제 대학은 이를 구성하는 각 제도간에도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각각이 분명한 기능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그리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는 똑같이 개방체제 대학을 구성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개방성, 산업계와의 연계성, 그리고 학사운영의 융통성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이로써 이들 개방체제 대학은 입학자의 자격, 학사운영, 학위수여의 조건과 과정 등에서 각각의 특성을 지니게 하여 서로 다른 학습자(clients)를 대상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림 4〉 참조).

넷째, 개방체제 대학은 우리나라의 기본학제인 단선제의 이념을 구현하는 효율적인 제도로 개혁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단선제에 기초하여 충실히 운영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헌법의 교육기회균등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법 제81조는 단선제에 의거한 학교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의 어느 단계에서든 일단 한번 선택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것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교육은 여러 단계와 유형으로 나누어져서 실시되지만 동일한 단계의 교육에 있어서는 변화된 학습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교육의 과정과 내용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볼 때 같은 개방체제 대학들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특별히 요구된다 하겠다.

### 3) 개선방안

개방체제 대학들간의 기능정립을 위한 몇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대학에서의 이론위주의 교육과 구별하여 산업대학에서는 전문기술인의 양성과 이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교육법 제128조 6 항에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의 목적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제도가 갖는 개방성, 산업계와의 독립성, 그리고 학사운영의 융통성 등에 있어서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의 목적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개방대학이라는 명칭은 현재 개방대학의 목적과 교육내용을 대변하는 데 적절치 않으므로 법규적인 명칭도 모두 산업체학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법규에서 개방대학은 방송통신대학과 함께 평생교육, 계속교육, 전문기술인 양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독립적으로 규정될 산

입대학의 목적에서는 산업대학이 전문기술인의 양성과 그들에 대한 계속·재교육의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특색 있게 육성한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공부주도의 산업기술대학은 개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 산업체 근무 경력자, 기술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실업고교출신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7, 8조의 내용에 따르면, 개방대학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선발방식에서는 실업계 고교출신, 기술자격 취득자, 산업체 근무 경력자 및 산업체 위탁교육자를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대학이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기술인력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재교육의 기관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증 소지자, 일정기간 산업체의 특정분야에서 근속한 자, 그리고 산업체가 교육을 위탁하는 자는 무시할 진형이나 정원외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방대학이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한 연장교육기관임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장이 추천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가 개방대학의 동일계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일정비율(50%) 내에서 미리 선발토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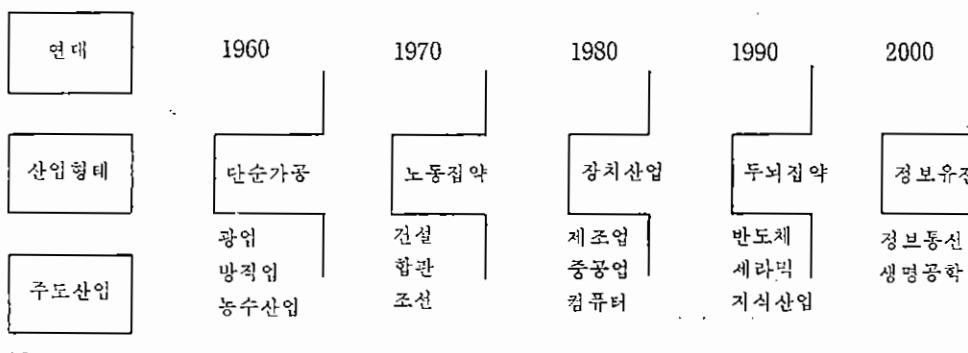
셋째, 국가산업의 발전전망과 지역적 안배 원

칙에 따라 개방대학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

다음의 <그림 5>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나라 주도산업의 형태는 거의 10년을 주기로 해서 크게 변화하여 왔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이후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급속한 속도로 재편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체는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왔다. 대기업이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처해 온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각 기업체 단위별로 산업교육원 혹은 기업체 대학을 설치·운영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이수 효과와 결과는 각 기업체 내로만 한정되게 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각 기업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내대학의 설립 주체가 사내대학을 학교법인으로 설립하기를 원하고 각 사내대학의 시설과 교육과정이 산업대학의 설치운영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이들 사내대학을 사립산업대학으로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 개방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방대학의 시설을 규제하는 독자적인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문학교 시설 정도를 갖춘 개방대학에서는 질적인 대학교육을 보장받을 수 없다. 더욱이 개방대학과 일반대학을 비교할 때도 일반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야간과정이 대부분의 개방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므로 개방대학교육의 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단 독자적인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설립을 인가받은 개방대학은



\* 자료 : 이무근·손승요·박진규, “산학협동의 활성화 : 문제와 대책”, 한국고등교육연구회, 1990.

<그림 5> 산업체의 발전 모형

그 질적인 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대학 차원의 자체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기관평가 혹은 프로그램 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방송통신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핵심적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기회 균등 측면에서 볼 때, 방송통신대학은 경제적 지리적 직업상의 이유로 적령기에 수학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에게 우선적으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 산업대학에 붙여지고 있는 개방대학이라는 용어는 방송통신대학에 붙여지는 것이 더욱 걸맞는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방송통신대학은 입학지원자, 수학장소, 수업방식, 교육과정 등에서 개방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통신대학은 공공의 소유라 할 수 있는 방송전파를 매개로 하여 수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 지향하는 이념이 최대의 공익성을 지향해야 한다.

여섯째,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 간의 교차등록제(cross registration) 또는 학점 상호인정제를 확대시켜야 한다.

교육법 제56조의 1항은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같이 하는 대학이 서로간 학점교류방법을 구체적으로 학칙에 명문화 시켜 놓으면 학점교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학간 학점교환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지향하는 목적이 같은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이 서로에 속해 있는 인적 자원과 시설물을 제공하여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연계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개방대학들끼리뿐만 아니라 개방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상호간 편입학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개방의 정도에서 볼 때 전통적 대학은 완전폐쇄형, 개방대학은 부분폐쇄형, 방송통신대학은 부분개방형, 독학학위제는 완전개방형의 고등교

육기관 육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분폐쇄형 대학에 속한 개방대학에 처음 등록한자는 학기중에 직접 출석수업과 현장실습경험을 가져야만 학위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변화된 학습여건에 따라 개방대학 입학자가 정해진 장소에서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개방대학에서 이수한 과정을 인정받으면서 부분개방형에 속한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계속 수학할 수 있도록 이들 대학간에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방송수업은 포괄적인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파가 지닌 높은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방송통신대학의 수업내용은 방송통신대학의 학생들을 위주로 짜져야 하되, 독학학위제에 관심을 가진 자들을 위한 공개강좌 형태로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독학학위취득의 제1과정인 교양과정 인정시험에 지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7조(응시자격)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강화시켜 방송통신대학에서 일정기간 이상 수학한 자 혹은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하여 대학에서 최소한의 교수—학습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열째, 독학학위취득제에 의해 수여되는 학위가 일반대학이나 혹은 여타의 사회교육기관에서 수여되는 학위와 똑같이 사회로부터公信力を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업무를 수행해 나갈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열한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는 현존의 고등교육기관과 업체들과의 협조와 연계 속에서 융통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의 운영과 이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사회교육 관련 기관인 방송통신대학이나 개방대학들의 연합체 등에 의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맷음말

우리나라에서 개방체제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그리고 특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는 1948년 교육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제도를 보완하여 현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진작시키기 위해 도입된 대안적 고등교육기관이라 볼 수 있다. 대안적 교육기관이란 學齡期 (school age) 이외까지의 교육영역 확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 일상생활의 필요에 보다 밀접히 관련있는 교육형태, 학습자·학부모·일반시민이 교육적 결정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폭 확대, 교육목적·계획 및 집행에서의 개방성 증대 등을

기도하는 혁신적 고등교육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안적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이들 교육기관은 종전의 學歷主義에 기초한 교육이 아닌 能力과 必要에 더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특학학위제가 대학검정고사의 정도로, 개방대학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중간 단계 정도로,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이 많고 많은 4년제 대학들 중에서 제일 많은 등록생을 두고 있는 정도로 自足한다면 이들 고등교육기관이 도입된 趣旨가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